

KiRi 세미나

IFRS 17 시행에 따른 계약자배당 제도 개선방안

노건엽(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23.12.20.(수)

목 차

I. 개요

II. 제도 현황

III. 해외 제도

IV. 개선 방안

〈붙임 1〉 계약자 배당제도 규정

〈붙임 2〉 계약자 배당제도 연혁

〈참고문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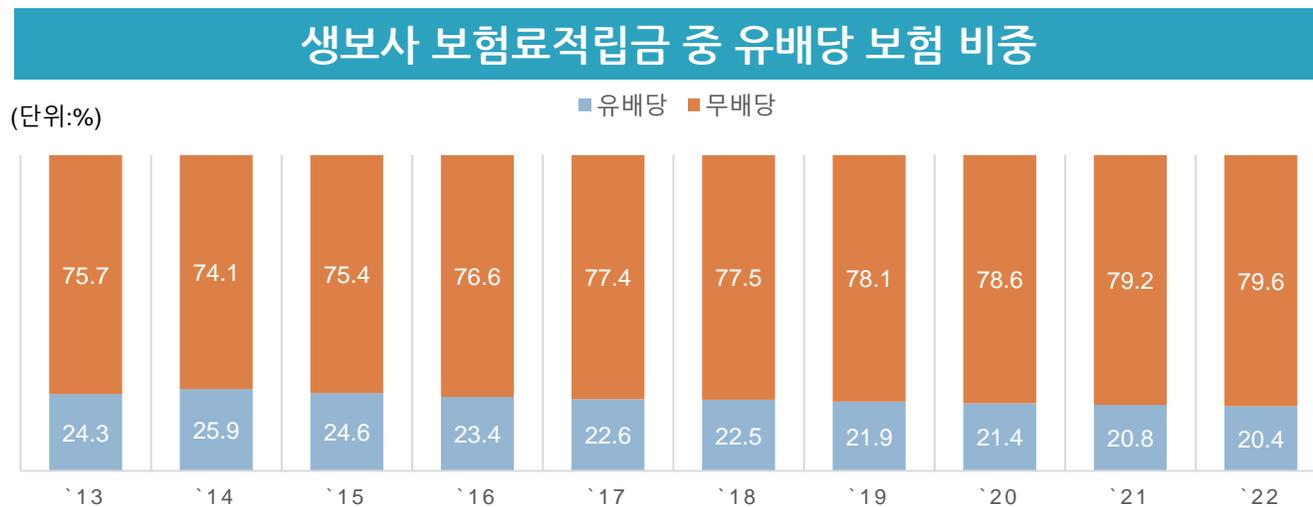
개요

검토 배경

-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이에 기반한 감독회계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이 개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IFRS17에 기반한 감독회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 제도는 종전 규정 (IFRS4 및 IAS39)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적용함
 - 제도 변화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방안은 개정 (<붙임 1> 참조) 되었으나 손익분석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종전규정을 따르고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에 적합한 계약자 배당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함
 - 계약자 배당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붙임 2> 참조)

현황

- 계약자 배당은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상품별 배분)하는 제도로써 책임준비금 내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생보사의 보험료 적립금 중 유배당보험은 매년 감소하여 2022년말 기준 20% 수준임
-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전 당기순이익을 유배당과 무배당 계약 및 주주지분으로 배분하고 이후 계약자배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문제점

- IFRS17 시행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회계(IFRS4) 기준의 당기손익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계약자배당제도는 유지가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함
 - IFRS4 기준 유지시 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또한 IFRS17 회계 및 계리시스템 외에 IFRS4 기준의 회계 및 계리시스템도 동시에 운영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함
- IFRS17 및 계약자 배당 원칙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계약자 배당 원칙

- **공평성** : 배당금액의 결정이 계약자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
- **탄력성** : 잉여금의 배분이 경영실적, 사회경제의 환경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함
- **간명성** : 공평성과 탄력성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의 이해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배당방식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계되어야 함
- **계속성** : 계약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배당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됨

II

제도 현황

부채 평가 및 이익 표시

- IFRS17에는 평가시점 가정 (실제 위험율, 시장이자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의 기대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부채에 별도 표시함
- 보험부채를 이용하여 원천별로 이익을 표시할 수 있음. 기존에는 손익분석이라는 방식으로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었으나 IFRS17 도입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 등에 정보가 제공됨

부채평가

미래현금흐름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 순유출액 (현금유출 - 현금유입)

- 현금유출 : 보험금, 직접신계약비 등
- 현금유입 : 보험료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

-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 조정

위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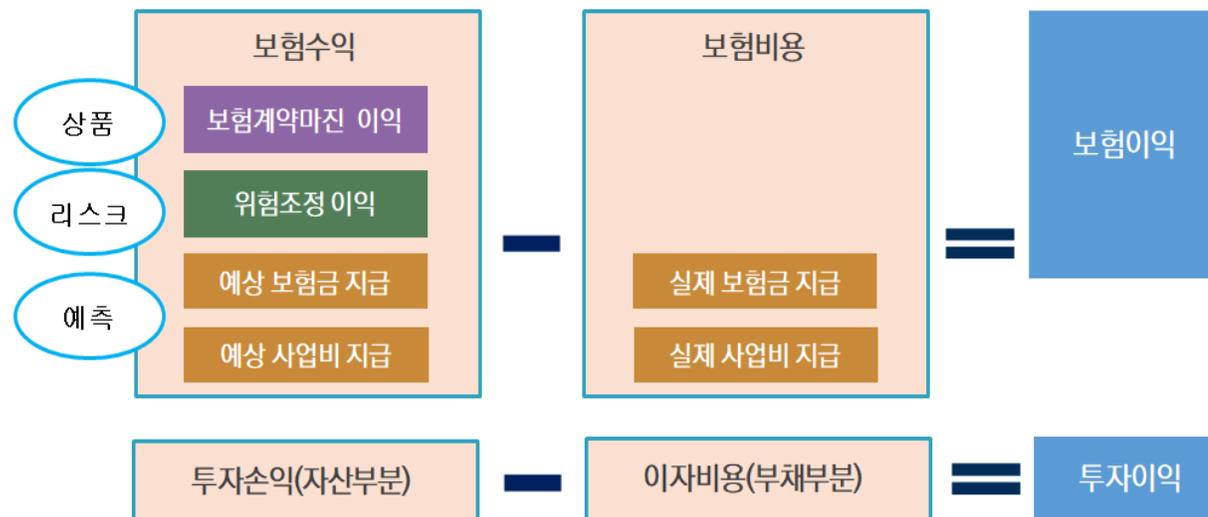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불확실성 보완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이익의 현재가치로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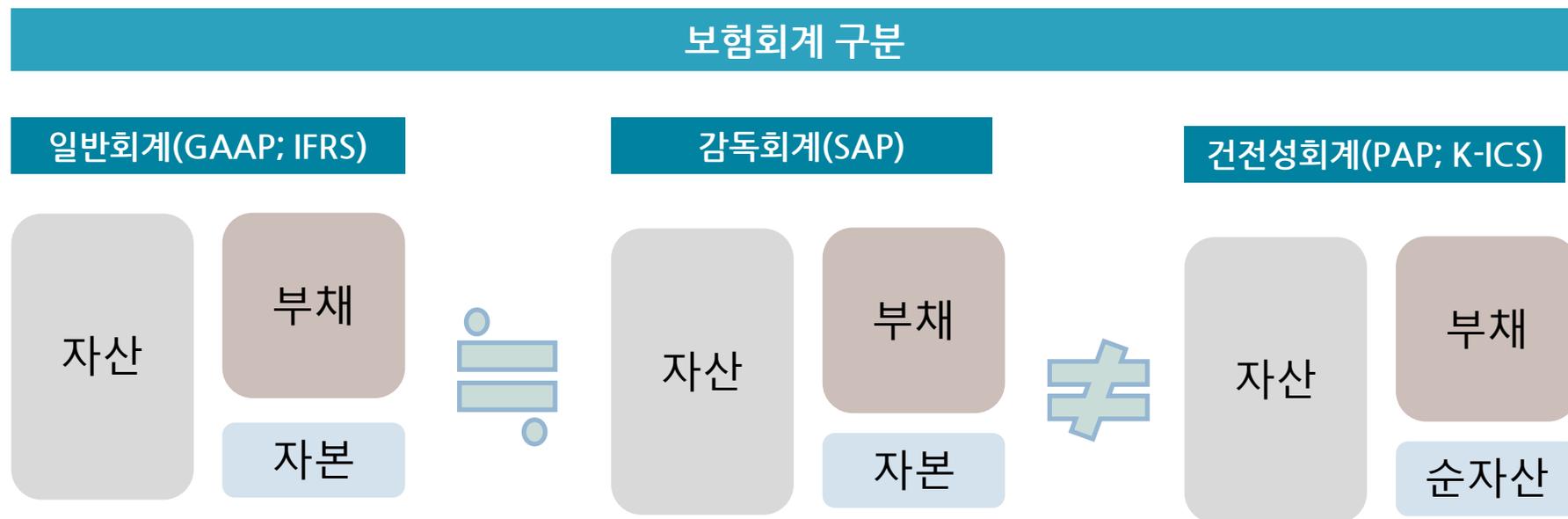
- 현금유입 - 현금유출 - 위험조정

이익 표시



보험회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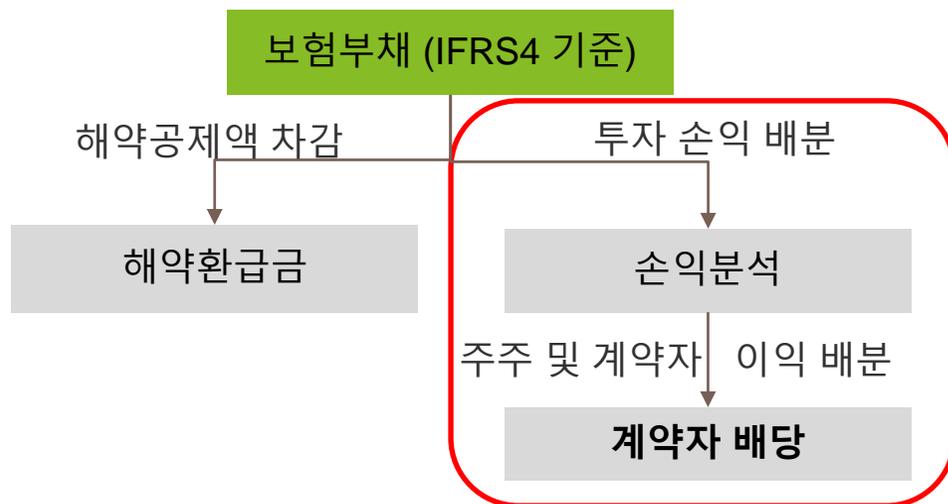
- 감독회계(SAP)에서 “책임준비금 평가”, “계약자배당”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 일반회계는 IFRS17이 되며, 감독회계는 IFRS 17 기반의 감독목적 회계임
 - 계약자보호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감독목적 정보제공을 위해 감독회계가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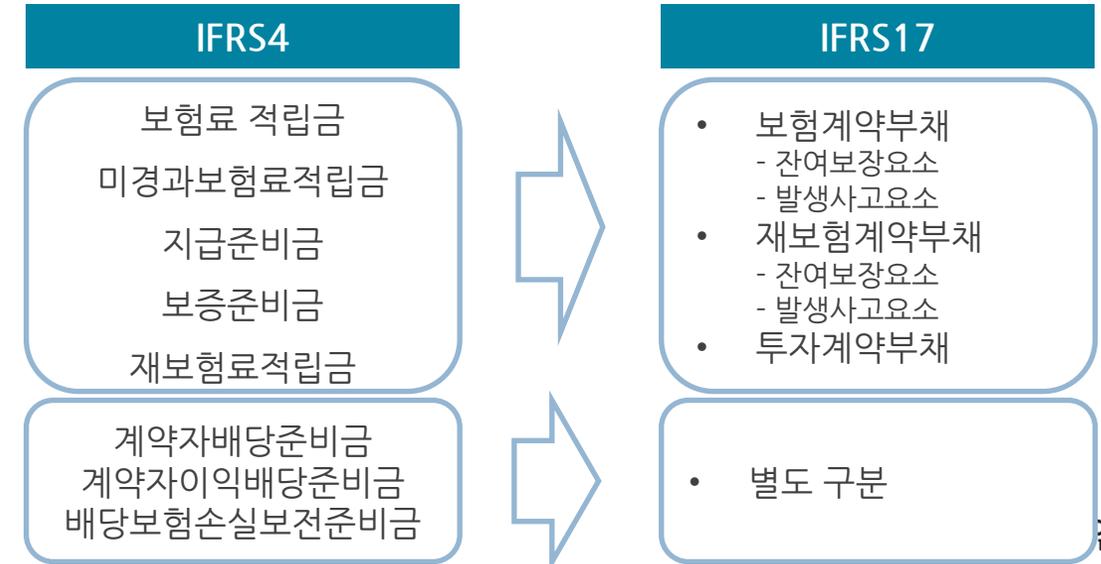
보험부채 평가제도

- 보험부채는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등 계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계약자 배당도 보험부채 평가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이로 인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기존 방식(IFRS4 기준)을 유지함
 - 손익 배분을 IFRS17 기준 보험부채를 이용하게 되면 손익의 변동성으로 인해 계약자배당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
- IFRS17에서 계약자배당은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별도 표시하지 않아 감독회계에서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을 정보성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함

보험부채와 계리제도간 관계



보험부채 구성



손익분석 제도

- IFRS4 기준의 손익분석은 보험회사 경영성과인 잉여금 변동내역을 분석하여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 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험부채 해당손익(유배당 보험손익, 무배당 보험손익, 투자손익)으로 구분함
 - 보험손익은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세분화된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됨
- 투자손익은 원가 기준의 보험부채에 비례하여 상품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유/무배당 상품의 자산이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고 운용되어 투자손익 배분이 필요함

보험부문 손익

-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 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 증가액 + 해지당시 기준 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 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 관련항목

투자부문 손익

- 책임준비금 해당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 이자

투자손익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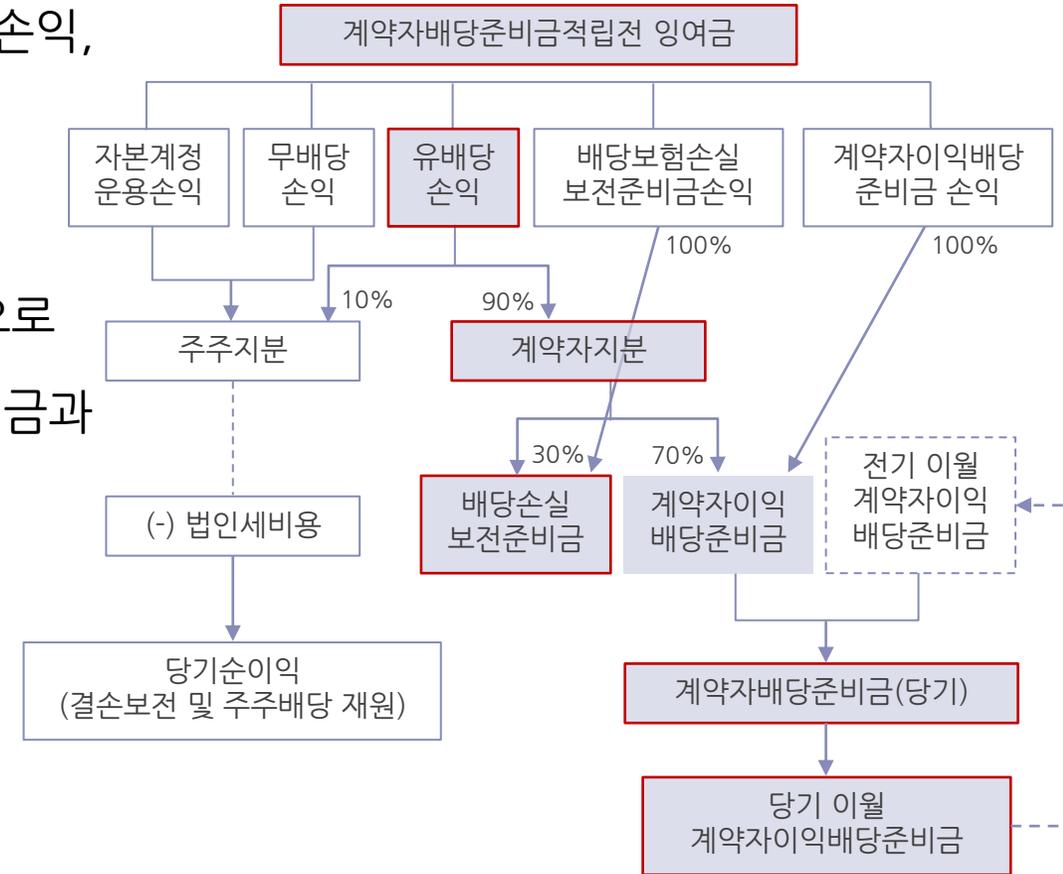
-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잔여액 × [(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투자손익관련 책임준비금 + 기말 투자손익관련 책임준비금) / (2 + 평균적립이율)

계약자 배당 제도

· 기존 IFRS4 보험부채 기반으로 산출된 손익을 기준으로 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함

-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 잉여금'을 유·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등으로 구분
- 유배당 보험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함
- 산출된 계약자지분의 30% 이내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 70%는 전기 이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합산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구성함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에 사용함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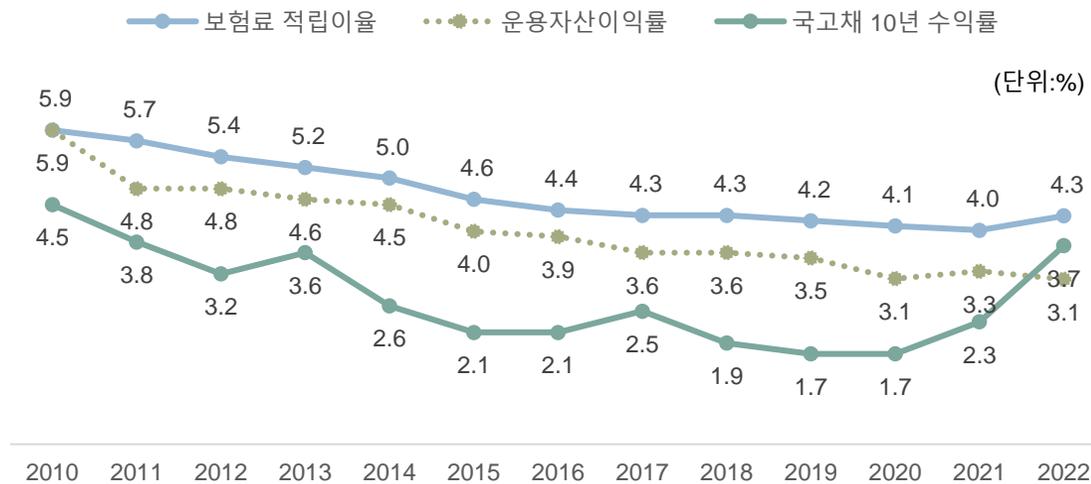


자료: 오창수, 김경희(2020),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계약자 배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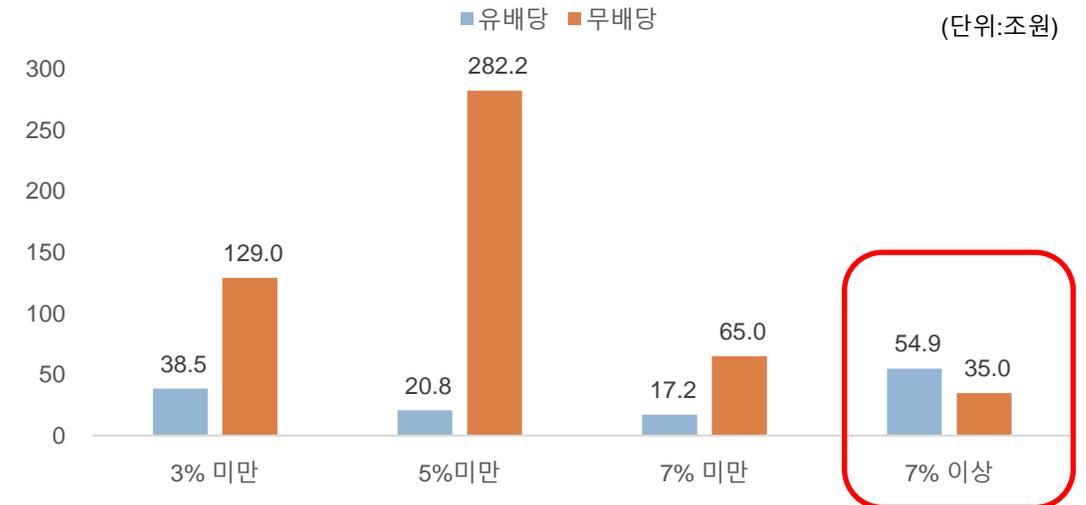
- 생보의 경우 보험료 적립이율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이차역마진 상태임
- 생보 유배당 상품은 7% 이상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고금리 유배당 계약에서는 배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이익에 대한 배당이 발생할 수 있음

생보 적립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각사 업무보고서

생보 적립이율별 유/무배당 보험료적립금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2022년말)

III

해외 제도

캐나다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IFRS17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고 기존에도 시가방식으로 평가함
 - 기존에는 CALM(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라는 시가방식의 보험부채평가방식을 적용함
- 유배당 상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타 계정으로 자금이체는 제한됨
- 보험회사는 “기여도 원칙”을 반영한 다양한 배당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여도 원칙은 계약자배당시 배당가능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이 공헌한 기여도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 3이원 방식의 경우 예정이율 등을 고려하여 분배가능 잉여금을 산출함

$$\begin{aligned}
 \text{분배가능 잉여금} &= (\text{실제수익률} - \text{예정이율}) \times (\text{전기 책임준비금} + \text{순보험료}) \\
 &\quad + (\text{예정사망률} - \text{실제사망률})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 \text{당기 책임준비금}) \\
 &\quad + (\text{영업보험료} - \text{순보험료} - \text{실제경비}) \times (1 + \text{실제수익률})
 \end{aligned}$$

-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지나친 변동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수익률과 시가방식 보험부채의 변동성으로 인해 배당금이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평활화 방안”을 적용함

미국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LDTI 시행함

*Long Duration Targeted Improvement

- 기존 일반회계는 순보험료식 평가방식이나 2023년이후 IFRS 17과 유사한 시가방식 보험회계제도(LDTI)가 도입됨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재량에 따라 계약자 배당 사항이 정해지나 주(state)에 따라 법에서 정하기도 함

- 대부분 주에서 유배당보험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감독회계를 기준으로 함

- 뉴욕주 보험법은 잉여금에 대한 계약자 배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주의 경우 배당 이익의 10%와 가입금액 1,000달러당 50센트 중 큰 값을 최고 한도로 함

- 캐나다와 유사하게 기여도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자 배당을 함

- 미국 Prudential 보험사의 경우 구분 계정(Closed Block) 내에서 계약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함

How is my policy's dividend determined?

Each year, Prudential's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the total amount of dividends to be distributed in the coming year. This careful assessment takes into account the amount of funds we need to maintain the capital position and overall financial strength of the company and the overall experience of Prudential's Closed Block.¹ The amount of your policy's dividend will generally be in proportion to the policy's contribution to overall Closed Block results.

Dividends on individual policie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ng policy and when the policy was purchased. Your policy's dividend is based on the actual experience of Prudential's Closed Block with the following:

- **Investment Returns:**

Returns earned on the invested assets supporting life insurance policies similar to yours.

- **Mor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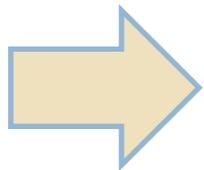
Our death claims experience with life insurance policies such as yours.

일본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상호회사가 대부분임
- 책임준비금은 기존 국내 방식과 동일한 원가 방식(순보험료 방식)으로 평가함
- 유배당보험은 3이원 배당과 이차배당 방식으로 구분되며 배당주기가 상품에 따라 다양함
 - 3이원 방식은 매년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3년 배당하는 상품을 판매함
 - 이차배당방식은 주로 5년단위로 손익을 합산하여 잉여금 발생시 배당하며 일부 보험회사는 3년 또는 1년 단위 상품을 판매함

소결

- 계약자 배당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법규로 규정화하여 일정 기준을 제시함
 -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거나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해외 제도는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가는 기여도 원칙, 평활화 방안 등 배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



- 해외는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 계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출방식이 상이함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V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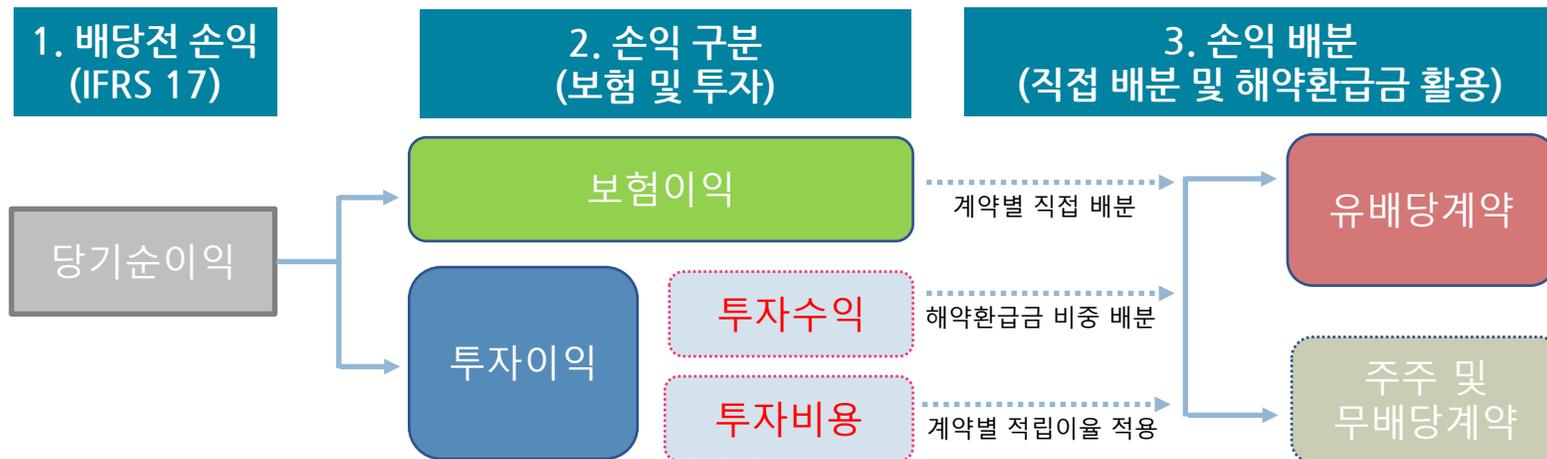
추진 경과

- (22.3월) 배당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함
- (22.7월) TF 운영으로 배당손익 산출기준 및 배분기준 등 마련하고 기준을 바탕으로 계량영향평가 실시함
 - (기간) `22.7~`22.12 (5개월)
 - (구성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 각 4개사 과장급 실무자로 구성하고 보험연구원에서 검수 및 자문 수행함
 - (계량영향평가) TF에서 마련된 안을 기반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22.9월) 개선된 배당제도를 기존계약 소급시 발생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함
 - 유배당보험 기초서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 2곳에 질의함
 - 대부분 보험계약은 기초서류 변경없이 소급적용 가능하나 금리차 배당 등 기초서류상 배당기준을 명확히 표현한 경우 해당기준 적용 필요함
 - 불필요한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배당제도 개선안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22.11월) 배당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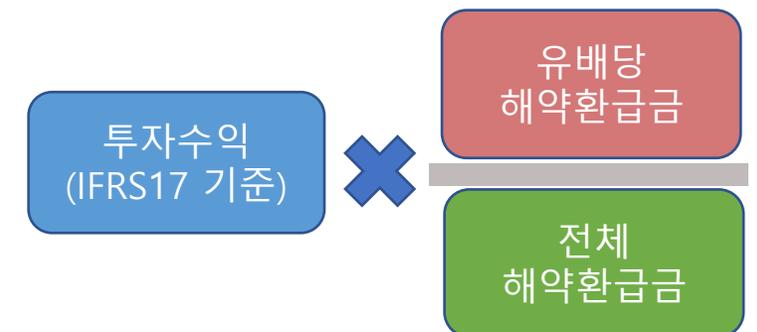
개선 방안

- IFRS17 손익을 활용하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별로 그대로 귀속하고 투자손익은 기존 제도와 유사하게 배분되도록 방안을 마련함
 - (보험이익) 보험계약별로 직접 이익을 배분함
 - (투자수익) 자산적립 기여도에 부합하도록 원가방식 부채평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 (해약환급금과 유사)
 - (투자비용) 해외 사례 및 기존 제도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함 (적립이율과 유사)

계약자 배당 산출 과정



투자수익 배분



개선방안 마련 근거

- (기본방향) 이종결산 등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IFRS17 기준 재무제표를 최대한 활용한 기준을 마련하되 유·무배당 계약자 기여도 등에 비례한 합리적 배분 및 배당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기준을 마련함
- (배당 전 손익) IFRS17 기준의 실현된 손익을 기반으로 유배당 손익을 산출하여 일반회계와 일관성 유지함
 - 회계감사 등을 통해 검증된 손익이므로 배당손익 산출 적정성에 대한 계약자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함
- (투자이익 배분) 투자이익 배분 비중, 부담이자 등을 계약자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해약환급금 및 적립이율 반영한 기준에 따라 산출함
 - 보험계약 적립이율(부담이자) 초과 운용수익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계약자 배당제도의 취지이나 IFRS17 재무제표상 부담이자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적립이율과 무관하게 유배당손익이 배분될 우려가 있음
 - IFRS17 부담이자를 투자비용으로 적용시 생보사는 감소하나 손보사는 오히려 기존보다 증가함 (2022년말 기준)
 - * 대형생보사 금리확정형 평균 부담이율 : 6.17% (IFRS4) → 3.06% (IFRS17)
 - * 대형손보사 금리연동형 평균 부담이율 : 2.76% (IFRS4) → 3.94% (IFRS17)

계량영향평가

- (합리적 기대) 개선안 적용시 배당액이 기존과 유사하여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함
 - 유배당 연금저축 계약자는 개선안 적용시 배당액이 유사 또는 소폭 증가하므로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 고금리 유배당* 계약자는 제도 개선 전후 변화 없이 계약자 배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고금리 적립이자(7% 이상)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배당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 역마진에 따른 손실 매년 Δ2조원 내외 발생 → 개선안 적용시 Δ1조원 내외 손실 예상 (2023년 상반기 기준)
- (안정적 배당 지급) 제도 개선이후 배당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보험이익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등으로 인해 이익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확보됨
 - 투자이익은 해약환급금 및 적립이율 기준 등으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음

연금저축 유배당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추정치)	
						기존 (IFRS4)	개선안
생보	1,402	1,566	1,807	1,857	957	700	720
손보	1,587	1,643	1,571	1,354	1,130	461	786

· 각사별 업무보고서 및 '23. 상반기 계량영향평가 결과

** 유배당손익 합계 = 각사별 Max(유배당손익, 0)의 합계금액

*** 실제 계약자 배당 재원은 ① 유배당 손익 중 계약자 몫 ②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자수익 ③ 과거 배당재원(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의 합으로 이루어짐

대안 검토

- (적용 방안) 보험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이익도 IFRS17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수익) 유무배당 배분 비중을 해약환급금이 아닌 IFRS17 준비금 기준으로 함
 - (투자비용) 계약별 적립이율이 아닌 평가시점 금리를 기준으로함
- (영향평가) 손보사 유배당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배당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손보사는 부담이자 증가로 2022년말 유배당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배당이 어려워짐
- (한계점)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배당재원의 기여도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생보사 유배당 일반계정계약에서 배당이 발생하나 손보사 유배당 연금저축계약에서는 배당이 미지급되어 분쟁 제기, 배당 재원에 대한 계약자간 형평성 등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IFRS17 기준 전체 유배당손익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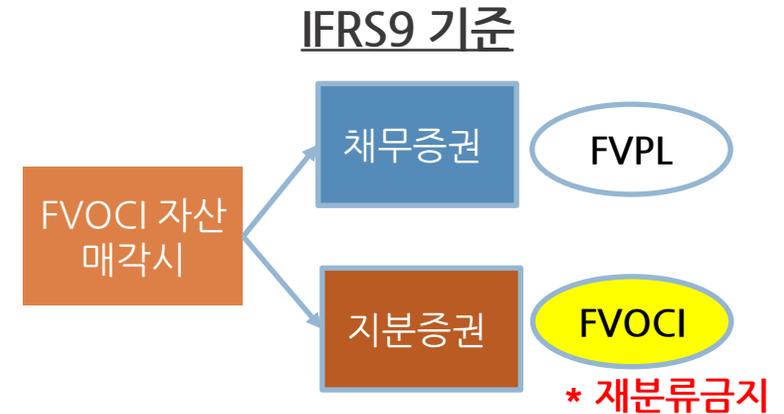
구분	2022년말		2023년 상반기		구분	2022년말		2023년 상반기	
	IFRS4	IFRS17	IFRS4	IFRS17		IFRS4	IFRS17	IFRS4	IFRS17
생보사	Δ23,163	6,381	Δ13,583	5,319	손보사	980	Δ1,406	191	708*
배당여부	배당가능		배당가능		배당여부	배당불가능		배당가능	

· 일시적으로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등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였음

기타 개선사항

- (지분증권 매각손익) 분류(FVPL, FVOCI)와 관계없이 지분증권 처분시 손익이 계약자배당재원에 포함되도록 감독규정 보완함

- IFRS9에서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로 분류할 경우 처분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이 되어 계약자배당재원에 포함되지 않음 (IAS39에서는 처분시 당기손익에 반영됨)
- 지분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되어야만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분류됨



- '22년말 금융당국은 유배당계약자 몫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부채로 적립토록 함
- (손익구분 단위) 3이원방식에서 총괄손익으로 변경하여 보험 및 투자손익 합산 금액이 (+)인 경우에 해당하는 “총괄배당 방식”으로 변경함

- 기존(IFRS4)에는 3이원(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별로 당기손익을 분해하고 배당손익을 배분함
- IFRS17 기준에서 손익은 3이원이 아닌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으로만 구분됨
- 다만, 기존도 총괄손익이 (+)인 경우에만 배당하므로 총괄배당방식으로 개선시에도 계약자 배당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붙임 1 > 계약자배당 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제4-3조의3(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 신설 2022. 12. 23. >)

①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 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붙임 2 > 계약자 배당 제도 연혁

- 국내 계약자배당제도는 1965년 특별배당제도 실시한 이후 위험률차 배당(1984년), 이자율차 배당(1988년), 사업비차 배당(2001년)이 순차적으로 도입됨
- 무배당보험은 1992년 도입으로 이전에는 유배당보험만 판매되었음

연도	제 도
1965~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배당제도 실시 (보험 예정이율과 은행 예금금리 간 차이를 보상)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배당 도입 · 보험예정이율과 은행 정기예금이율 차이를 배당금으로 지급 · 1993년 금리차보장금으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1997년 이차배당으로 흡수됨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률차배당 도입
1985~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배당 시행 (생명표 변경[조정국민생명표 → 간이경험생명표]으로 인한 차이 정산)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도입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당보험 도입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차배당 도입 · 3이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별 배당제도 완료

< 참고문헌 >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12.28), “K-IFRS 1117호 (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2022),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 오창수·김경희(2020),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 오창수·김경희(2023), “IFRS17 시행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 정봉은,노병윤,목진영 (1997),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